2018년도 제5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8년 3월 8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함 준 호 위 원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전 승 철 부총재보

신 호 순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이 환 석 조사국장 신 운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상 형 금융시장국장

이 승 헌 국제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병 희 공보관

이 동 원 의사팀장

6. 회의경과

<의안 제9호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공개시장운영 수행과 관련하여 단기 유동성 조절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통화안정계정 입찰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통화안정계정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주요 배경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예기치 못한 유동성 공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통화 안정계정 예치수요 변동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통안증권 발행여건이 악화 될 경우 통화안정계정 확대를 통해 유동성 조절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위원은 통화안정계정 응찰금리가 시장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당행이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통화안정계정 낙찰금리가 시장금리보다 크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질 경우 시장금리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장금리와 크게 괴리된 응찰에 대해서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통화안정계정 응찰 부진 시 RP 매각을 통해 유동성 조절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RP 매각을 통한 유동성 조절규모는 RP 매각용 국고채 보유규모에 제한되는 만큼 RP 매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따라 RP 매각용 국고채 확충을 위한 국고채 단순매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공개시장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공개시장운영규정」개정(안)(생략)